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17

발의연월일: 2022. 12. 13.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김희곤 • 박대수 • 배준영

이종배 · 최영희 · 최츄식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자 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 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 인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 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 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 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 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3조, 제64조, 제69조 및 제70조).
 -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 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2)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함.
-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3조 및 제83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보다 늦추는 것으로 조 정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산업생

- 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 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 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 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

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 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1.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3.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4조에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4. "교육자유특구"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16.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 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7.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 18.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 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19.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 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 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균형발전의 날) 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한 다.
 - ② 지역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7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63조에 따른 지방시 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한다.

- ②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에 관한 사항
-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 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정부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6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시 ·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 별 계획(이하"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

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홍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3. 제15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2조에 따른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 권발전시행계획 수립 당시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 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 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부문별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

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 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

- 제13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

- 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방대학(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사항
 -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6. 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 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 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지역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제19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3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6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교육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 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 ④ 교육자치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 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 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 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 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 2. 지방세 납부 현황
- 3. 사무소 소재 현황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 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 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지원,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 23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6조제2 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1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 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

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 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 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협력 사업(이 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의 장 및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 제35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 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 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 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8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 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39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 지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

- 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 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41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

- 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 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수 있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 (計上)하여야 한다.

제42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 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 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 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

로 정한다.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 제4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 장소 등을 둘 수 있다.
 -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제46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4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 제47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46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 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 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 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제49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 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51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 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 원할 수 있다.
 -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 로 한다.
- 제5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3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 개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5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여야 한다.

제57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5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
 -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 제59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0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

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 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
-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 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 제61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2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9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 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 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64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 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

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26조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제28조에 따른 혁신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 9.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육성에 관한 사항
- 10.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 12.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 · 통합방안 ·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4. 제7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5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대표자로 한다.
-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여성가족부장관
- 2. 법제처장
-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 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①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 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7조에 따른 지방 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 ·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지방시대지원단 및 지역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시대지원단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역균형발전지원단 또는지역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7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지원단, 지역균형발전지원단 및 지역균형

발전지원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0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있다. 다만, 제35조 및 제6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 제72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 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 와 향후 계획
-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국회는 제7조에 따라 보고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되,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7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4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

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76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 의 재산으로 한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7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 금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
 -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9. 제81조에 따른 전입금
- 10.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11.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 ·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계정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으로의 전출금
-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8.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9.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10.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 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 · 보조 또는 융자
-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 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 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14. 계정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으로의 전출금
-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제79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4.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7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의 전출금
-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4.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7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2.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의 전출금
-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 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 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②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④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2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83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2항·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 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 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한다.
 -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 제84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2. 제77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 3. 제77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 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5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 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

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해서는 아니 된다.
- 제86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 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7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 제88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9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7조제2항·제78 조제2항·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 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

부받은 때 또는 제88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5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5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79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수 없다.
- 제9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91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2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2항제7호,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임명할 수 있다.
 -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93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7조제2항·제78조제 2항·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0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2023년 4월 27일
 - 2. 부칙 제21조제1항: 2023년 6월 11일
 - 3. 부칙 제21조제7항 및 제39항: 2023년 1월 1일
 - 4. 부칙 제21조제9항: 2025년 1월 1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885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4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② 제60조제4호 및 제62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 ③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 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 제4조(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특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부문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국회에의 연차보고에 관한 특례)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 고서의 작성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한다.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 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

른 초광역권(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으로 보다.

- 제8조(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 제9조(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역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제7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발전계획안,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 권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계획은 각 지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계

- 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제 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 시행계획은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10조(혁신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혁신도시를 포함한다)는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로 본다.
- 제1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는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본다.

- 제1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제31조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본다.
- 제13조(지역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전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②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4조(출자·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4월 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31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제33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본다.

- 제16조(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의 두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의 두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으로부터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겸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5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본다.

- 제18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심의한 사항은 제66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6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 제19조(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설 치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기구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제67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이 승계한다.

- 제20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7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
- 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과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 ⑦ 법률 제1848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제1항제1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⑩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⑥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역균형발 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로 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②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②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❷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❷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 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 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 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 획"으로 한다.

➂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85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 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③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

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③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과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 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 신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6 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투별회계"로 한다.

④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④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

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로한다.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 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